

# 임직원 윤리 행동 지침

	작성	검토	검토	승인
결 재				

주식회사 엔켐



◆ (주)엔켐의 윤리규범 기본정신과 이해관계자들의 윤리 원칙

- ① 기본정신 ② 고객과 협력사에 대한 약속
- ③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약속 ④ 임직원에 대한 약속
- 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

◆ 윤리규범 실천을 위한 구체적 행동 강령

- ① 고객 및 협력사와의 거래 ② 이해관계 상충 ③ 회사 자산 보호
- ④ 정보보호 및 공유 ⑤ 임직원의 자세

◆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세부 행동 기준

- ① 금품 ② 향응 및 접대 ③ 편의 ④ 직무와 관련된 정보

항 목	내 용
기본 정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● (주)엔켐은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정도 경영을 기반으로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고객, 주주,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, 발전하는 회사가 되고자 한다.</li></ul>
고객 및 협력사에 대한 약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● 고객의 가치를 경영의 최우선으로 하고 고객의 발전이 곧 회사의 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행동한다.</li><li>● 협력사는 회사 경쟁력의 원천이며, 모든 거래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.</li></ul>
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약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●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주주 및 투자자의 투자수익을 성실히 보호한다.</li><li>● 주주 및 투자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경영활동에 대한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.</li></ul>
임직원에 대한 약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● 임직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,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.</li><li>● 개인의 창의성을 자유로이 발휘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.</li></ul>
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●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사업전개와 건전한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제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.</li><li>● 사업 및 영업 활동 시, 환경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, 해당 국가와 지역의 환경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.</li></ul>

항 목	내 용
고객 및 협력사의 거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● 모든 거래는 공정하고 평등한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고, 상호존중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.</li><li>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한 강요행위 및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.</li></ul>
이해 관계의 상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●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직,간접 불문하고 금전, 향응, 접대, 청탁, 금전대차 등을 하지 않는다.</li><li>● 경조금은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</li></ul>
회사 자산의 보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● 회사의 자산은 회사의 사업 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.</li><li>● 영업정보 및 내부비밀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는다.</li></ul>
정보보호 및 공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● 회사 정보 및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.</li><li>●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재직 시 및 퇴직 후에도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.</li></ul>
임직원의 자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● 임직원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, 폭언, 욕설, 성희롱 등 개인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.</li><li>● 회사와 임직원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능동적, 주도적, 창조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, 부서 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</li></ul>

## □ 실천지침

enchem '2020 VISION 2,000억 달성'

항 목	내 용
목 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● 본 실천지침은 윤리규범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품(금전 및 선물), 향응, 접대, 편의제공 등의 수수 및 공여와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등의 대처요령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li></ul>
준수의무와 책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●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실천지침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.</li><li>● 최고경영자는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의 바탕인 윤리규범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에게 '윤리경영 실천 서약서'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.</li></ul>
금 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●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전이나 선물, 또는 경제적 이익을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.</li><li>● 임직원 사이에서는 금전이나 선물, 또는 경제적 이익을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 또는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.</li></ul>
향응과 접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●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향응 및 접대 행위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.</li><li>● 업무와 관련된 협의 등은 사내에서 이루어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외부 진행에 있어서는 그 만남 등이 향응 및 접대로 변질될 우려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li></ul>
편 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●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편의제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.</li><li>●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임직원의 카드대금,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 결제하거나 상환하였을 경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간주한다.</li></ul>
직무와 관련된 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●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그 정보 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</li></ul>

# 임직원 윤리 행동 지침

2020. 09. 16 제정

## 제 1 조 (목적)

이 지침은 윤리규범의 시행과 관련하여 상황에 따른 적절한 행동의 지침을 안내하고, 윤리규범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안 기준의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준수의무와 책임)

- ① 전 임직원은 본 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, 실천 지침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.
- ② 최고경영자는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의 바탕인 윤리규범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에게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## 제3조 (용어의 정의)

1. "금전" 또는 "금품"이라 함은 현금, 유가증권 및 기타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.
2. "향응" 또는 "접대"라 함은 식사, 음주, 스포츠, 오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.
3. "편의"라 함은 금전 또는 향응 및 접대를 제외한 교통, 숙박, 관광안내 및 행사 등의 지원을 말한다.
4. "이해관계자"라 함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유/무형적 손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/외의 모든 자연인, 법인, 단체를 말한다.

## 제 4 조 (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행위)

1. 금전 수수 : 이해관계자가 금전을 제공할 경우에는 받아서는 안되고, 요구 · 약속하지 않으며, 부득이 받게 된 경우 정중하게 거절하여 돌려주어야 한다.
2. 선물 수수 : 이해관계자가 선물을 줄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하여 돌려주어야 한다. (판촉물이나 할인혜택 등의 경우, 누구에게나 허용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으나 의도적인 혜택인 경우는 선물로 간주한다.)
3. 경조금 : 개인 경조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경조금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4. 비용 부담의 금지 : 거래선 접대 또는 부서 회식 등에 이해관계자를 불러내어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영수증을 건네 주고 정산액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.
5. 향응 및 접대 :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향응 및 접대 행위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. 업무와 관련된 협의 등을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외부 진행에 있어서는 그 만남 등이 향응 및 접대로 변질될 우려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6. 편의 제공 : 제공된 편의의 내용이 법률, 관례상 금지되지 않은 수준이며 다수에게 제공되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의 사용과 중복(동승)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, 이 외의 경우 편의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.
7. 협찬/찬조 제공 : 야유회, 체육대회, 워크샵 등 사내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, 물품, 교통 등의 협찬을 제공받아서는 안 되며, 이해관계자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업무 목적이어야 하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참석해야 한다.

8. 차용, 염가 매입, 고가 매도 : 이해관계자로부터 임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의 편의나 영리를 위해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. 또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수수하거나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,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금지되며, 이러한 행위는 금품 수수로 간주한다.
9. 부채 상환 : 부채(카드대금, 외상값, 대출금 등)에 대한 결제, 상환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 들여서는 안 되며, 행위 시 금품 수수 행위로 간주한다.

#### **제 5 조 (고객 및 협력사와의 거래)**

- ① 모든 거래는 공정하고 평등한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고, 상호 존중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.
- ②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한 강요 행위 및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.

#### **제 6 조 (직무와 관련된 정보)**

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제 3 자에게 그 정보 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# **제 7 조 (회사 자산의 보호)**

회사의 자산은 회사의 사업 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.

#### **제 8 조 (정보보호)**

- ① 회사 정보 및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.
- ② 회사의 영업 정보 및 내부 비밀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는다.
- ③ 회사의 영업 비밀에 대해서는 재직 시 및 퇴직 후에도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.

#### **제 9 조 (임직원의 자세)**

- ① 임직원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폭언, 욕설, 성희롱 등 개인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.
- ② 회사와 임직원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능동적, 주도적, 창조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부서 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